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첫걸음

대구광역시본부 이동원 본부장(영남일보, 2022.03.30.)

해마다 800건이 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21년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은 0.43‰로 역대 최저치를 달성하였으나, 주요선진국(OECD) 평균 0.32‰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모두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 서야 한다.

2022년 산재 사망사고예방의 첫걸음은 단연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아닐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기업에 그 책임을 묻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산재 사망자는 42명(35건)으로 52명이었던 지난해보다 10명 감소했다. 중대재해예방을 향한 신호탄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자에게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전담 조직 신설, 필요한 인력과 예산 편성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명시 하고 있다. 단순 사고예방활동에서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안본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산재 예방 주체가 힘을 합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우선, 산안 본부는 산재예방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허브로 고위험 사업장을 위주로 컨설팅, 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기관별 특성화된 안전 보건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용노동부·공단의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현장 생태계 전반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소통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nowing is not enough, we must apply. Willing is not enough, we must do.

괴테는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행해야 한다.' 말했다. 결국은 우리의 사업장에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